

---

# 2023년 농식품기업 제품디자인 개발 및 상품고급화 지원사업 지침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

# '23년 농식품기업 제품디자인 개발 및 상품고급화 지원사업 지침 요약

항 목	사 업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구매동기에 제품 디자인 비중이 높아지는 현 트렌드에 맞게 농식품기업의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상품 고급화를 지원하여 농식품 기업 육성 강화</li> </ul>
대 상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시에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li> </ul>
지원요건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li> <li>■ 운영실적 2년 이상</li> <li>■ 자부담 확보가능 업체</li> </ul>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시 생산제품에 대한 상품화 디자인 개발비 지원</li> <li>- 신규/기존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패키지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li> <li>※ 제품 포장지, 패키지 제작비는 사업비에서 제외</li> </ul>
사 업 비 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소당 5백만원 이내</li> </ul>
재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비 80%, 자부담 20%</li> </ul>
대 상 자 선 정 심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서류평가(사업대상자 기본여건 검토)</li> <li>■ 2단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의의회」 심의 후 선정</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사후관리, 제재사항 등은 관련 법률 및 조례, 지침에 의함</li> <li>■ 사업계획 작성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집행 제외 작성</li> </ul>

# 23년 농식품기업 제품디자인 및 상품고급화 지원사업 지침

## 1 사업 목적

- 소비자의 구매동기에 제품 디자인 비중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농식품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2 지원 근거 및 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및 제50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3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3년 농식품기업 제품디자인 및 상품고급화 지원
- 사업기간 : 2023. 5. ~ 10.
- 사업량 : 5개소
  - ※ 1차 공모 결과 4개소 2단계 심의평가 대상자로 선정
- 총사업비 : 25백만원(시비 20, 자담 5)
  - 지원규모 : 개소당 5백만원 이내(시비 8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전주시 생산제품에 대한 상품화 디자인 개발비 지원
  - 신규/기존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패키지디자인 등 개발 및 리뉴얼
    - ※ 제품 포장지, 패키지 제작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사업대상 : 전주시에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
- 지원자격
  - 농산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 운영실적 2년 이상 기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일 기준
  - 자부담 확보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농업법인 기본요건 충족 시
- 2순위) 전주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활용 식품제조가공업소
- 3순위) 기타 식품제조가공업소

### 농업법인 지원요건

-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으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지원 제한대상】

- 최근 3년 이내('20~'22년)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
- \* 관련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북도, 전주시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 최근 5년 이내('18~'22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위반한 기업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2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

## 5 신청방법

- 공모기간 : 2023. 4. 26.(수) ~ 5. 4.(목)
- 접수기간 : 2023. 4. 26.(수) ~ 5. 4.(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방문 제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 식품가공팀(063-281-6738)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순서에 따라 증빙서류 편철 후 제출

연번	신청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직인 날인)	서식 제1호
2	사업계획서	서식 제2호
3	도내산 및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및 세부내역(2022년도) - 증빙 서류(구매내역 등) 첨부	서식 제3호
4	보조사업 이력서	서식 제4호
5	보조사업 성실이행 협약서	서식 제5호
6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7	탄소중립 실천서약서	서식 제7호
8	<b>법인공통)</b>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b>농업인)</b>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b>농업회사법인)</b>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출자금 및 농업인의 출자지분 확인 서류(ex)주주명부, 표준재무제표증명('21~'22년)	해당 시
9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10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필수
11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디자인 개발 대상 제품)	필수
1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1~'22년) 1부	필수
13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견적서, 비교견적,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필수
14	자부담 증빙자료(잔액증명서, 정기예금증서 등)	필수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필수

**6 사업추진 일정** \*여건에 따라 추후 일정 변경 가능



**1) 사업신청단계**

**시**

- 「농식품기업 디자인개발 및 상품 고급화 지원사업」 지침 수립 및 사업공모

**보 조 사 업 자**

-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등 붙임자료 참조
  - 농식품산업과 사전문의(지원 가능여부 및 발생비용 등) 후 신청서 제출

**2) 사업선정단계**

**시**

※ 1차공모 신청업체 우선선위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평가심의회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

**< 1단계 : 서류평가 >**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 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 투자 여부 등 기본여건 검토
  - 서류평가 결과 기본요건 충족 시 심의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단계 : 심의평가 >**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평가
  - 사업의 필요성,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등

### 3) 세부계획 수립

#### 시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알림(시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안내

#### 보조사업자

- 공모선정 시 제출한 사업목적·계획에 부합하게 세부시행계획서(월별 추진계획 포함)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 사업비 산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작성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
  -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동안 해당 사업자는 동사업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제한

### 4) 시행단계

#### 시

- 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승인하고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안내
  - 시는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정 지시
  - 사업목적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
- 세부시행계획 변경 시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 (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첨부)
- 시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조건 및 본 지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변경 불가

## 5) 자금집행단계

### 보 조 사 업 자

- 우선적으로 자부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증빙자료 포함)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지급신청

### 시

-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한 후에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6) 사후관리

### 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은 부당한 사항을 알았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 조치

## 7] 유의사항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선정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지원사업자 선정 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사업계획 작성 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집행을 제외하고 작성
-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사업완료 시 포장 및 패키지 샘플 제작 및 제출 필수